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55호

나.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권수정 의원 외 34명 찬성)

다. 제안일자 : 2021년 8월 9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은 삭제가 되었는바, 이에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5조제4항, 제10조 등).
- 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과 조문, 위원회 명칭과 기능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발의되었음.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기본 사항(총칙, 제1장)부터 경비 부담(제2장), 지방보조금(제2장의2), 예산(제3장), 재정분석·공개(제5장), 긴급재정관리(제5장의2), 채권·부채의 관리(제9장·제10장) 등 다양한 재정분야의 관리·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왔음.
- 이 중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한 법률 규정이 미흡해 상당 부분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저해되어 왔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로 인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교부절차,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을 제정(2021.1.12, 시행 2021.7.13)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였음.
-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관리·감독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별개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법 체계 >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3)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시·도비 기준보조율(§3), 예산 계상 신청(§5), 예산 편성 및 운영(§6)
제3장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교부 신청(§7), 교부 결정(§8), 교부 조건(§9), 교부 결정 통지(§10), 교부 결정의 취소(§11·§12)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용도 외 사용 금지(§13),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과 인계(§14·§15), 수행 상황 점검(§16), 실적 보고(§17), 회계감사(§18),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19), 시정 명령(§20), 재산 처분의 제한(§21), 중요재산의 부기등기(§22)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이의신청(§23), 별도 계정의 설정(§24), 신고포상금 지급(§25),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6),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27),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28), 검사(§29), 명단 등의 공표(§30)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지방보조금의 반환(§31),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32),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33), 지방보조금 환수(§34), 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35), 강제 징수(§36)
제7장 벌칙	벌칙(§37~§39), 양벌규정(§40)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재편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령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음.

< 근거 법령명과 조항 변경 관련 규정 >

조항	현행	개정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②	법 제32조의2제2항	법 제6조제2항
제10조①	법 제32조의3	법 제26조
제11조①	법 제32조의2 제3항	법 제26조제2항
	6.법 제60조	6.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9조①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경우를
제24조	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32조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①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4조②	법 제32조의9제3항	제21조제3항
제35조①	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제60조

- 또한, 종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부정사용자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음.

< 위원회 기능 확대 규정 >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7. · 8. (생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u> 5. (현행과 같음) <u>5의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u> <u>6. 「지방재정법」 제60조</u> ----- -----. 7. · 8. (현행과 같음)

- 아울러, 안 제36조는 「지방보조금법」에 맞춰 조의 제목과 내용을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37조는 이의신청 대상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을 추가하였음.
- 이 밖에 안 제4조와 안 제12조는 띄어쓰기, 오탈자 등의 문구상 오류를 정비하고 있음.

< 문구 정비 관련 규정 >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보조대상) -----(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 -----. 제12조(회의 등) ① ----- <u>제11조에 따른</u> ----- -----.

- 한편, 부칙 제2조는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조례에서 보조금 근거 법률로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일괄 정비하였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의 제정·시행에 맞춰 근거 법령과 조문,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해 관계법령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임.
-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각각 삭제하고 「지방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일괄 정비한 바, 이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시행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조례상에 법률과 다른 정의를 두는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됨.
- 다만, 입법의 편의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현행처럼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이 밖에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시비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계상이 가능한 예외 사항(제5조제2항),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제7조제2항),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그 밖에 취소 사유(제12조제1항), 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된 신고 포상금(제25조)과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공개(제30조),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제26조제12항)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구)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관련 조문대비표>

(구)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u>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u>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⑥ <u>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u>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2133-8055